

의안번호	2112588
의 퇴 인	이학영의원
회 답 일	2021.10.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안 제92조의2)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의 상한 기준을 현행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조정함(제1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 기준을 현재 30만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상향하여 「전기사업법」 상 분산형 전원의 설비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복합화력발전 등을 이용하도록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 집단에너지¹⁾사업이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됨
 - 현행법 제92조의2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의 경우 제31조제1항²⁾에도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봄³⁾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총 76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31개의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39개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6개의 병행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21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 특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 자세한 집단에너지사업자 현황(2019 기준)은 [참고자료1] 참조

□ 현행법은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⁴⁾ 개정안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이 허용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 기준을 확대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확대되는 경우 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감소 추계를 위해서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자의 전력판매량 및 판매단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begin{aligned} \text{○ 재정수입감소} &= \sum_{t=2022}^{2026} [\text{신규사업자의 전력판매량}_t \times \text{판매단가}_t \\ &\quad \times \text{부담금 부과요율}(3.7\%)] \end{aligned}$$

□ 다만,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서 허가구역 내에서 전기를 신규로 공급할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동사업자에 의한 전력 생산량·판매량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의 추계가 곤란함

-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구역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추진절차는 [참고자료2] 참조

- 현행법에서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는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사업자 또는 다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⁵⁾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구역전기사업자가 될 자의 신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사업자의 전력 생산량·판매량 등 예상하여 재정수입감소를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
- 5)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참고자료 1] 집단에너지사업자 현황(2019년 기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난방사업자

번호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설치용량		비고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1	서울에너지공사	노원	438	37	438	37		
		신정3	30.9	6	30.9	6		
		목동	595.6	24.2	554.6	24.2		
		마곡	428	285	172	—		
2	부산광역시	해운대	238	—	238	—		
3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서	926	—	808	—		
		일원/가락한라	369.3	19.5	365.9	19	구역전기	
		동남권유통단지	112.1	32	112.1	32	구역전기	
		남서울(중앙)	562	—	552	—		
		상암/상암2	249.6	9.2	200.2	9	구역전기	
		고양	1,288.00	—	766	—		
		삼송/원흥	315.7	99	315.7	99	구역전기	
		용인	1,077.30	—	959	—		
		용인서천	50	—	50	—		
		수원광교	297	144.8	297	144.8		
		수원	688	43.2	620	43.2		
		대구	434.5	46.5	384.5	46.5		
		광주전남혁신도시	285.8	22	181	22		
		김해	192	20	150	—		
		양산물금	229.7	118.9	117	—		
		청주	657.8	319.3	341	58		
		파주교하,운정	503	515	500	515		
		성남판교,도촌	344.4	146.3	344	146		
		화성동탄1,2	1,243.80	1,280.40	877	1,280.00		
		분당	839.4	—	440.4	—		
		평택고덕	420.8	—	420.8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1,251.00	1,037.60	494	5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서남부	322.2	48.3	322.2	48.3	
아산배방탕정			325.2	107.7	236	101.7		
5	GS파워	안양	852.5	939.8	852.5	942.3		
		부천	1,067.90	460.6	1,058.40	450		
6	안산도시개발	안산, 화성남양, 송산그린시티	819.2	62.6	383.4	62.6		
		시흥군자	265.6	6	193.9	—		
7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공항신도시	588	127	236	127		
8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논현2, 서창2	364.9	24	296.9	24		
9	인천종합에너지	송도국제도시	1,190.30	187.3	500	187.3		
10	나래에너지서비스	강동강일1,2, 고덕	234	—	77.8	—		
		하남미사, 하남강일, 현안1,2	456.2	398.9	456.2	398.9		
11	수완에너지	광주수완	156	109	156	109		
12	대륜발전	의정부민락2, 고산	178.2	—	109.4	—		
		양주옥정, 회천	402.1	531.5	340.7	524.3		
13	별내에너지	남양주별내, 지금, 구리갈매, 서울양원	319	130.4	163.7	130.4		
		남양주진건	112.7	2	—	—		
14	대구그린파워	대구혁신도시	228.4	415	228.4	415		
15	위례에너지서비스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391.9	459.4	313.4	454.3		

번호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설치용량		비고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16	내포그린에너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559.8	555	44	—	
17	춘천에너지	춘천우두,소양,약사,캠프페이지	177.3	422.4	177.3	422.4	
18	한국씨이에스	광주상무	51	—	47	—	
19	포스메이트	포항	62.9	—	62.9	—	
20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1,424.80	—	502.3	—	
21	평택에너지서비스	평택소사벌	560	—	418.1	—	
22	휴세스	화성향남2동담2호매실남양뉴타운	448.6	—	345.4	—	
23	부산도시가스	명지지구	275.8	—	68.8	—	
24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	222.2	100.3	147.2	100.3	구역전기
25	대성에너지	대구죽곡1,2	63.3	12.3	60.6	9	구역전기
26	티피피	양주고읍	101.5	21	101.5	21	구역전기
27	제일(구.중부도시가스)	천안청수	61.5	25	61.5	25	구역전기
28	삼천리	광명역세권,소하,신촌	179.2	48.1	110.6	46	구역전기
29	삼성물산	아산탕정	44.3	7.3	44.3	7.3	구역전기
30	씨엔씨에너지	대전학하,노은3,덕명	200.2	26.1	165.8	26.1	구역전기
31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시티	21	9	21	9	구역전기
계			26795.20	9,441.90	19032.20	7,652.90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번호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설치용량		비고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1	지에스이엔알	반월국가공업단지	868	83.5	868	77	
		구미국가산업단지	635.6	98.4	635.6	98.4	
2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184	19	184	19	
3	케이지이티에스	시화국가산업단지	240.4	—	211.3	—	
4	SK에너지	SK에너지울산공장	1,474.70	90.1	1,474.70	90.1	
5	롯데케미칼	여수국가산업단지	269.4	42.2	269.4	42.2	
6	군장에너지	군산지방산업단지	1,478.30	423.6	1,478.30	423.6	
7	에너지원	울산공업단지	30.3	—	30.3	—	
8	오리온에너지	여수국가산업단지	135.6	30.3	135.6	27.8	
9	서대구에너지	서대구산업단지	70.7	1.5	70.7	1.5	
10	상공에너지	익산제2산업단지	110.3	9.8	110.3	9.8	
11	김천에너지서비스	김천1,2산단,대광농공단지	429.3	59	429.3	59	
12	현대에너지	여수국가산업단지	741.4	126.2	741.4	48.4	
13	이건에너지	인천지방산업단지	85.2	8.1	85.2	8.1	
14	현대오일뱅크	대산석유화학단지	612.8	53	612.8	53	
15	고려아연	온산국가산업단지	510.1	—	510.1	—	
16	대재에너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53	—	53	—	
17	LS-Nikko동제련	온산국가산업단지	194.5	—	194.5	—	
18	천일에너지	포천염색산단	68.7	—	6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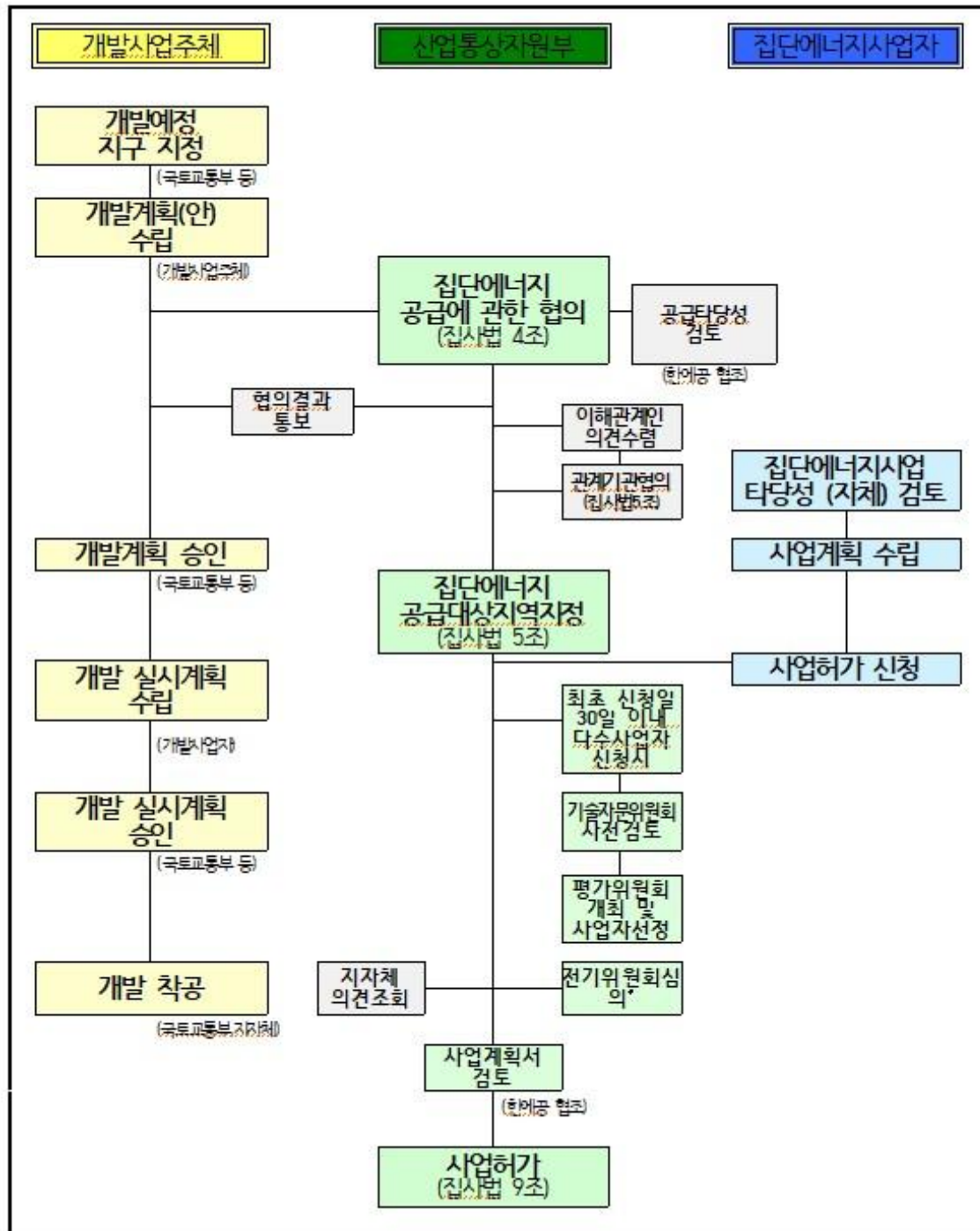
번호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설치용량		비고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19	보광에너지(주.포스코CDI)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53.9	—	29.6	—	
20	충청에너지(주.건설산업)	오창과학산단	99.2	—	91.1	—	
21	광한농	울산미포국가산단	86.8	—	86.8	—	
22	태광산업	울산미포국가산단	153	—	153	—	
23	S-OIL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207.6	—	207.6	—	
24	롯데정밀화학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64.7	—	49	—	
25	울산이앤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85.6	—	53.5	—	
26	코엔텍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74.6	—	74.6	—	
27	국산산업(주.영세차비스)	구미국가산업단지	44.6	—	44.6	—	
28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	대구염색공업단지	571.6	72.9	571.6	72.9	구역잔기
29	한화토탈	삼성종합화학1,2단지	475.4	91.7	475.4	91.7	
30	한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1,006.60	155	1,006.60	155	구역잔기
31	금호석유화학	여수국가산업단지	921.7	300	921.7	300	구역잔기
32	여천NCC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752	173	752	173	구역잔기
33	LG화학	여천석유화학단지	504.9	103.5	504.9	103.5	구역잔기
34	한화에너지	여수국가산업단지	846.2	259.9	846.2	259.9	구역잔기
		군장국가산업단지	909.1	221.9	909.1	221.9	구역잔기
35	씨텍	서산대죽지방산단	645.6	72	645.6	72	구역잔기
36	SK케미칼	SK케미칼울산공장인근	335.8	27	335.8	27	구역잔기
37	성림에너지	녹산국가산단 및 신호산단	78.7	9.1	78.7	9.1	
38	울산광역시	울산용연공업단지	74.8	—	74.8	—	
39	포승그린파워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195.4	43.2	195.4	43.2	
계			16,380.10	2,573.80	16,270.90	2,487.00	—

○ 병행사업자

번호	사업자	사업장	허가용량		설치용량		비고
			열 (Gcal/h)	전기 (MW)	열 (Gcal/h)	전기 (MW)	
1	전북집단에너지	익산1,2산단, 배산, 장신지구	149.8	19	128.3	19	
2	디에스파워	산업단지 : 오산공단	502.9	466.1	488.5	436.1	
		지역난방 : 세교1,2지구					
3	대전열병합발전	산업단지 : 대전3,4산단	535.3	125.5	502.9	88.2	
		지역난방 : 송강,둔산,테크노지구					
4	무림파워텍	산업단지 : 진주상평산단	373.2	26.3	373.2	26.3	
		지역난방 : 진주혁신도시					
5	석문에너지	석문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292.2	38.9	82.2	38.9	
6	OCI SE	새만금국가산단	1,430.40	318	611	303	
계			3,283.80	993.8	2,186.10	911.5	

[참고자료2]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추진절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위원회 심의시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허가사항 심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김계남
연락처	02-6788-4650
	godself@assembly.go.kr
